

2010 규정심의회 안내 및 유의 사항



입법안 제출 마감일

1. 2010 규정심의회 입법안 제출 마감일은 **2008년 12월 31일**입니다. 제출 마감일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계본부에 도착한 입법안들만이 정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간주되며, 2009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도착하는 입법안들은 2010 규정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**신년이라고 예외가 없음**을 주지해 주십시오.
2. 지구대회나 지구 우편투표에 의해 지구 심의 과정을 통과한 입법안들은 지구대회가 끝난 후 혹은 우편투표인 경우 지구총재가 정한 날짜로부터 **45일 이전에** 세계본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 (그러나 어느 경우든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)
3. 각 지구는 클럽의 입법안을 포함하여 **총 5개까지의** 입법안만을 제안해 줄 것이 권장됩니다.

수정안 제출 마감일

2008년 12월 31일까지 도착된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마감일은 (정관 및 세칙 위원회가 마감일을 연기하지 않는 한) **2009년 3월 31일**입니다.

입법안 책자 출판

입법안 책자는 지구총재, RI 전 이사, 규정심의회 대의원, 그리고 각 클럽의 총무에게 2009년 9월 30일까지 우송될 것입니다.

마감일:

2008년 12월 31일 / 제 2 차 연도 입법안 제출 마감일(단, RI 이사회는 시급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제정안을 규정심의회 개최 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. 또한 RI 이사회는 결의안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.)

2009년 3월 31일 / 제 2 차 연도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마감일

2009년 9월 30일 / 제 3 차 연도 입법안 책자(영어) 발송일

결의안

다음과 같은 ‘하자가 있는’ 결의안들은 2010 규정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
- 1) RI 정관 문서의 조문이나 정신에 저촉되는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나 표현이 포함된 결의안
- 2) RI 이사회나 사무총장의 재량에 속하는 행정 활동을 요구하는 결의안